

제301회 임시회
2011. 6. 23.(목)

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검 토 보 고 서



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

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장병학 의원외 6인

(장병학, 김영주, 박문희, 정 현, 김재종, 김동환, 이광희)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6월 15일
- 회부일자 : 2011년 6월 17일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자로 폐지되고, 시·도의회에 교육·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
- 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에 대한 청원 심사·처리 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“도지사”를 “교육감”으로 본다를 신설(안 제1조의2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5. 검토의견

- 장병학의원님이 대표발의한 「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」 일부개정 규칙안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교육·학예 사무를 관장하게 됨에 따라, 도의회에 접수된 청원에 대해 필요시 교육감에게도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,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조는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상의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 또는 “시·도지사”를 “교육감”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, 제4조는 시·도의회에 교육·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의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
- 안 제1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“도지사”를 “교육감”으로 본다는 간주 조항을 두면,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되며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규칙 제 호

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60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충청북도 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충청북도의회”로 한다.

제1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와의 관계) 이 조례에서 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“도지사”를 “교육감”으로 본다.

제2조제1항 중 “의회에”을 “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각 호의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”을 “제4조제3호에 따라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로 하고, “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6조제3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“의원으로 하여금”을 “의원에게”로 하고, 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각 호의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명기하고”를 “명확하게 적고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제9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9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(신 설)</p> <p>제2조(청원서의 제출) ① <u>의회에</u>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② ~ ⑤ (생략)</p> <p>제4조(불수리 사항의 통지)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</p> <p>제5조(이의신청) 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u>제60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<u>제1조의2(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와의 관계)</u> 이 조례에서 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“도지사”를 “교육감”으로 본다.</p> <p>제2조(청원서의 제출) ① <u>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</u>----- ----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불수리 사항의 통지) ----- -----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이의신청) ① -----<u>제4조제3호에 따라</u> ----- ----- ② -----<u>제1항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<u>제6조제3항에 따른</u>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제척과 회피) ① (생략)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<u>당해</u> 의원이 청원의 심사·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<u>다른 의원으로 하여금</u> 심사·의결하게 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<u>당해</u>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. ④ (생략)</p>	<p>제9조(제척과 회피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<u>해당</u>----- ----- <u>의원</u> -----<u>에게</u>----- ③ -----<u>해당</u>----- ----- -----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)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<u>각 호의 1</u>에 해당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. 1. ~ 3. (생략)</p>	<p>제10조(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) ----- -----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청원의 철회)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<u>명기</u>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 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.</p>	<p>제14조(청원의 철회) ----- ----- <u>명</u> -----<u>확하게 적고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5조(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)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<u>당해</u>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</p>	<p>제15조(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) ----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</p>
<p>제16조(징계) 청원을 심사·의결하는 의원이 <u>제9조의 규정</u>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</p>	<p>제16조(징계) ----- -----<u>제9조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과학·기술·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·학예사무의 관장) 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과학·기술·체육 그 밖의 학예(이하 "교육·학예"라 한다)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·광역시 및 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사무로 한다.

제3조(「지방자치법」과의 관계) 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「지방자치법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지방자치단체의 장" 또는 "시·도지사"는 "교육감"으로, "지방자치단체의 사무"는 "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"로, "자치사무"는 "교육·학예에 관한 자치사무"로, "행정안전부장관"·"주무부장관" 및 "중앙행정기관의 장"은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으로 본다. <개정 2008.2.29>

제4조(교육위원회의 설치) 시·도의회에 교육·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(이하 "교육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[법률 제10046호(2010.2.26)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]

제18조(교육감) ①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·도에 교육감을 둔다.

②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·도를 대표한다

□ 지방자치법

제73조(청원서의 제출)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 및 주소를 적고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제74조(청원의 불수리)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.

제75조(청원의 심사·처리)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.

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,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76조(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)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